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PACE DESIGN ALLIANCE OF KOREA(약칭:SDAK)”라 표기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내 공간디자인 관련 단체 상호간의 연구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공간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공간디자인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에 관한 자료의 수립 및 보급
2. 공공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3.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협력 및 교류
4. 심포지엄을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확산
5.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제반 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자격)

본회의 가입단체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단체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1. 정부의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한 법인단체
2.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

제8조(권리)

가입단체는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무)

가입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탈퇴)

가입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단체는 재 입회할 수 없다.

제11조(징계)

본회의 가입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5. 가입단체장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단, 이사 및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가입단체장은 각 가입 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④ 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사무총장)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사무총장은 각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사항을 집행 관리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각 가입단체장은 가입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되 3개월 내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⑤ 가입단체장은 각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이사)

-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 회장으로 공적이 현저한 분은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 역임자는 고문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 ③ 가입단체장 역임자로서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는 명예이사로 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임원 그리고 각 가입단체에서 추천한 2인의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전,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해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가입 단체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를 구성했던 가입 단체들에게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3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07년 7월 18일 제정
2010년 3월 16일 개정